

## 의과대학 학생생활상담소 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의과대학 학생생활상담소(이하 “상담소”라 한다)의 기능,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[개정 2022년 10월 11일]

**제2조(기능)** 본 상담소는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이해하고, 해결하기 위한 상담과 연구를 지원한다. [개정 2022년 10월 11일]

1. 학생의 교내외 생활 상담
2. 학생의 학습 상담
3. 학생의 진로 상담
4. 생활, 학습, 진로 등과 관련된 심리검사 시행 및 결과 해석
5. 상담 교육 활동 및 지원
6. 의과대학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7.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의 신고 접수
8. 그 밖에 상담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
**제3조(조직)** [개정 2022년 10월 11일]

1. 상담소에는 소장 1인을 두며, 소장은 의과대학장이 의과대학 교수 중에서 임명한다. 소장은 상담소를 대표하며 상담소의 업무를 통할한다.
2. 상담소에는 전임상담원을 1인 이상 둔다. 전임상담원은 학생상담, 심리검사 및 해석 등 상담소 업무를 수행한다.
3. 상담소는 외부 의료전문가 이용체계를 갖춘다.
4. 상담소에는 상담위원을 둔다. 상담위원은 학생상담에 관심이 있는 의과대학 교수 중에 학장이 임명한다. 임명된 상담위원은 연 1회 이상 상담 관련 세미나를 이수하고, 상담위원회에 참석한다.

**제4조** 삭제 <2022년 10월 11일>

**제5조(개인정보 보호)** 상담소의 소장, 상담위원, 전임상담원 등 모든 구성원은 상담소에서 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,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. [신설 2022년 10월 11일]

**제6조(상담위원회)** 상담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상담위원으로 구성하며, 연 2회 이상 상담위원회를 개최한다. 소장, 전임상담원, 상담위원 2/3 이상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. [신설 2022년 10월 11일]

1. 상담소 운영의 기본계획 및 활성화 전략
2. 상담소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3. 상담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4. 프로그램 운영 성과 등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5.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 부 칙

1. 본 규정은 2006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개정 규정은 201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.
3. 본 개정 규정은 2013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4.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.